

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6. 19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6. 19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00. 9. 1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)

가. 제안이유

○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·조사·자문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비상근 민간전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비상근 민간전문위원(이하 "비상근위원"이라 한다)을 분야별로 두며 연구분야는 시장이 정함(안 제2조)

○ 비상근위원은 4년제 대학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소관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(안 제3조, 제4조)

○ 비상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지급(안 제6조)

○ 비상근위원의 근무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(안 제7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p>○ 훈령으로 정책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?</p> <p>○ 10개 분야 선정 배경은?</p> <p>○ 분야별 인원은?</p> <p>○ 상근과 비상근의 차이는?</p> <p>○ 연구분야인 만큼 월별 예산액을 지급할 수 있지 않은지?</p>	<p>○ 훈령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개발연구단이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민간전문위원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.</p> <p>○ 연구단은 각 사업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선정된 후 간부회의를 통과한 분야입니다.</p> <p>○ 1개 분야 1명 기준입니다.</p> <p>○ 상근은 300일 이상이며 비상근은 300일 미만입니다. 월 12일 이내를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다.</p> <p>○ 분야별 과업을 지시하고 과업수행 기간을 환산하여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수정안의 요지

○ 별 첨

7. 소수의견요지

○ 10개 분야 중 일부는 이미 용역을 실시하여 활용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비상근 민간전문위원 분야에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정책연구를위한비상근민간전문위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제333호
의결년월일	2000. 9. 5 (제80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9. 2

제 출 자 : 기획재정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부천시와 관련한 정책연구를 위하여 분야별 민간전문위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어 “분야별” 조항을 삭제하고 6인을 둘 수 있도록 함
-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함

2. 주요골자

- 부천시와 관련한 정책연구를 위하여 분야별 비상근민간전문위원(이하 “비상근위원”이라 한다)을 둔다 중 “분야별”을 삭제하고 위하여 다음에 “6인 이내”를 삽입(안 제2조제1항)
-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(안 제4조제2항 신설)

부천시정책연구를위한비상근민간전문위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정책연구를위한비상근민간전문위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조례안 제명을 “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안”으로 한다.

안 제2조제1항 중 “분야별”을 삭제하고 위하여 다음에 “6인 이내의”를 삽입한다.

안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“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”

신·구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비상근민간전문위원) ①부천시와 관련한 정책연구를 위하여 분야별 비상근민간전문위원(이하 “비상근위원”이라 한다)을 둔다. ②(생략)	제2조(현행과 같음) ①…………… ……………6인 이내의…………… …………… ②(생략)
제4조(위촉) 비상근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. (신설)	제4조(현행과 같음) ①(생략) ②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정책연구를위한비상근민간전문위원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·조사·자문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비상근민간전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비상근민간전문위원) ①부천시와 관련한 정책연구를 위하여 6인 이내의 비상근민간전문위원(이하

“비상근위원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비상근위원의 연구분야는 시장이 정한다.

제3조(자격) 비상근위원은 4년제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소관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.

제4조(위촉) ①비상근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.

②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해촉) 시장은 비상근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시킬 수 있다.

1.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
2.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3. 품위손상 등 비상근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
4. 기타 위촉 원인이 소멸한 때

제6조(수당) 비상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비상근위원의 근무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